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가단361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변 론 종 결 2020. 10. 13.

판 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6,821,075원 및 그중 168,042,504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부터 2011. 8. 29. 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 22장을 할인받았다.

그 후 위 약속어음들이 지급거절 등으로 부도가 나자, 원고가 피고 등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 결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4. 1.부터 2011. 8. 2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13,804,5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위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081)에서, 위 법원은 2019. 12. 12. ‘피고가 C와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2011. 4. 1.부터 2011. 8. 2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68,042,504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68,042,504원을 초과하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되었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0. 13.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1) 한편, 피고는 2011. 8. 31.경 서울회생법원 2011회단14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회생개시결정이 2011. 9. 27. 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2. 9. 24. 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은 2016. 3. 4. 회생채무자인 피고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4.경 위 회생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어음약속을 할인해 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 합계 231,0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후 대여금 채권으로 신고된 위 231,000,000원 전액이 시인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2012. 9. 24.경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위 231,000,000원 중 98%에 해당하는 226,380,000원은 면제되고, 나머지 2%에 해당하는 4,620,000원이 변제할 채권으로 되었다.

라. 피고는 위 회생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9. 19.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1. 위 회생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의에 동의하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수행되는 경우 회생계획안상 시인된 채권액의 2% 변제안에 48%의 채무를 추가적으로 변제하여 총 50%의 채무액을 6년간(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분등분할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균등분할 변제하는 동안은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합니다.

3. 위 모든 사항은 회생계획안 인가 동의 후 확정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본건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이고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D가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형사고소 등으로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거나 영업활동을 부당히 방해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할인을 받은 방법으로 편취하여 부당이득한 위 168,042,504원을 원고에게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위 돈에 대한 2011. 8. 29.부터 2019. 6. 28.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231,253,371원에서 피고와 C가 원고에게 변제한 합계 132,474,800원을 빼면 2019. 9. 25. 기준으로 미변제된 나머지 이자는 98,778,57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의 잔존 원리금 합계 266,821,075원(= 원금 168,042,504원 + 잔존 이자 98,778,571원) 및 그중 원금 168,042,504원에 대한 2019. 9. 26.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51조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생 사건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그 신고 내용대로 확정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들을 할인해 주고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약속어음들의 할인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인가 ·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확정된 회생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약속어음들의 할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대여금 채권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행순

목 록

연번	일자	어음번호	지급기일	액면금(원)	편취금(원)
1	2011. 04. 01.	E	2011. 08. 31.	10,000,000	5,220,000
2	2011. 04. 06.	F	2011. 09. 01.	10,000,000	11,000,000
3	2011. 04. 21.	G	2011. 09. 03.	15,000,000	15,300,000
4	2011. 05. 02.	H	2011. 09. 15.	15,000,000	10,000,000
5	2011. 05. 11.	I	2011. 09. 01.	6,000,000	8,810,000
6	2011. 05. 13.	J	2011. 09. 29.	10,000,000	10,890,500
7	2011. 05. 20.	K	2011. 09. 30.	10,000,000	10,000,500
8	2011. 05. 23.	L	2011. 10. 11.	10,000,000	3,250,500
9	2011. 05. 27.	M	2011. 10. 15.	12,000,000	5,450,500
10	2011. 05. 31.	N	2011. 10. 22.	10,000,000	22,001,000
11	2011. 06. 07.	O	2011. 10. 22.	10,000,000	10,000,000
12	2011. 06. 09.	P	2011. 10. 25.	12,000,000	8,600,000
13	2011. 06. 17.	Q	2011. 11. 03.	9,000,000	14,000,000
14	2011. 06. 22.	R	2011. 11. 04.	6,000,000	4,000,000
15	2011. 06. 30.	S	2011. 11. 08.	10,000,000	10,000,000
16	2011. 07. 01.	T	2011. 12. 29.	20,000,000	6,680,000
17	2011. 07. 04.	U	2011. 11. 16.	10,000,000	7,000,000
18	2011. 07. 20.	V	2011. 11. 20.	7,000,000	10,000,000
19	2011. 07. 27.	W	2011. 11. 29.	12,000,000	10,000,000
20	2011. 07. 29.	X	2011. 12. 13.	10,000,000	16,600,000
21	2011. 08. 12.	Y	2011. 12. 14.	7,000,000	5,000,000
	2011. 08. 17.				600,500
22	2011. 08. 26.	Z	2011. 12. 27.	10,000,000	5,000,500
	2011. 08. 29.				4,400,500
합계				231,000,000	213,804,500

